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2022년 12월 27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법 무 부 장 관 한 동 훈

●법률 제19104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을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으로 한다.

제5조의11제1항 중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을 “자동차등을”로 한다.

제5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자동차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특가법상 교통범죄의 대상은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에 한정하고 있어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가중처벌 대상에서 빠져있어 특가법상 가중처벌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특가법상 교통범죄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운전자를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위험운전치사상죄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어린이 치사상죄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